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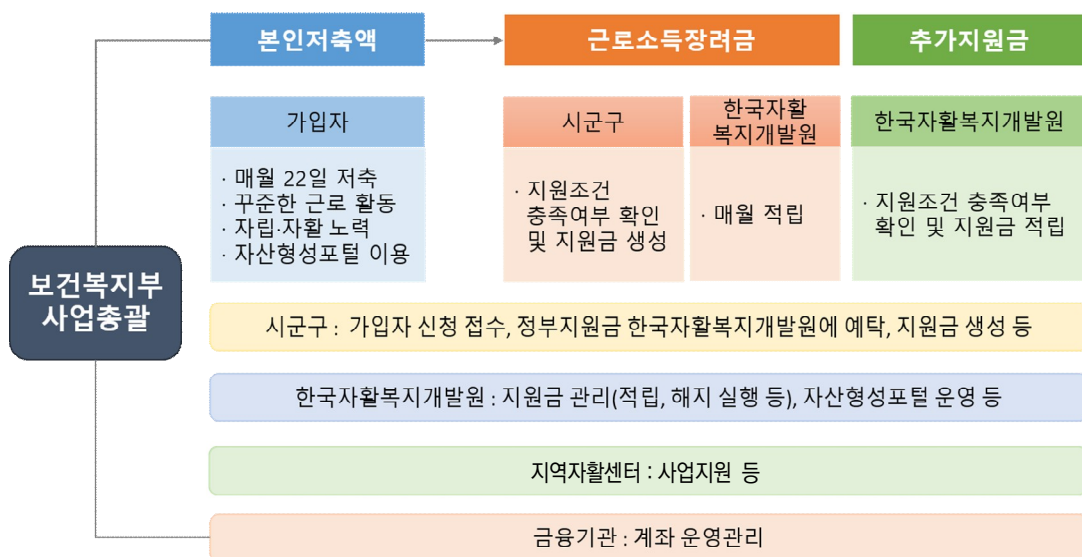
01

희망저축계좌 I

1 추진 배경

-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추진을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(workfare) 필요
- 그러나 기존 근로유인제도는 지원범위 협소, 소액 지원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며, 특히 일반 노동시장 취업수급자는 근로유인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함
-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저축계좌 I 을 통한 취·창업 지원,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(Total Solution) 노력

2 추진 체계



3 지원대상 및 내용

1 가입대상기준

- 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
- (근로·사업소득)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 (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)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- (근로활동)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, 근로·사업소득*이 있는 가구
 - * 「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」 지침 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'근로소득' 및 '사업소득'

-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, 의료급여 특례, 구진축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수급 가구의 경우에도 근로활동조건 및 소득기준특례 충족시 가입 가능
- [소득기준특례]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시설수급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를 넘는 경우에도 근로·사업소득이 유지기준(소득상한)*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
 - * (소득상한) 1·2·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%,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%
- 타법 의료급여 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수급권 신청 및 자격 획득 후 신청 가능
-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받는 가구의 경우 보장가구 산정기준은 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최대 가구원 수로 적용
 - 예) 4인 가구에서 1명의 소득활동으로 인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받는 가구가 생계급여는 분리(3명)보장받고, 의료급여는 함께(4명) 보장받는 경우 4인으로 적용

2 가입 및 유지기준

2025년 기준 중위소득, 가입 및 유지기준

(단위 : 원/월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 ¹⁾	2,392,013	3,932,658	5,025,353	6,097,773	7,108,192	8,064,805	8,988,428
가입 기준 ²⁾ (기준 중위소득 40%)	956,805	1,573,063	2,010,141	2,439,109	2,843,277	3,225,922	3,595,371
유지 기준							
소득하한 ³⁾	574,083	943,838	1,206,085	1,463,466	1,705,966	1,935,553	2,157,223
소득상한	5,025,353	5,025,353	5,025,353	6,097,773	7,108,192	8,064,805	8,988,428

1)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,623원씩 증가

2)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

3)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, 가입당시 근로·사업소득 기준 및 유지 시 소득하한 기준

- (소득하한)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이상, 6월 이상 연속 소득하한 미달 시 중도 환수
- (소득상한)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(1·2·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), 최근 3월 평균 소득이 소득상한 초과* 시 중도 지급

* 단, 탈수급하지 않은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통장 유지 가능

3 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

- (지원요건)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유예기간(3년 만기 후 6월) 이내 탈수급
- (소득환산의 예외)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(3년간)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. 단,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

① 매월 본인 저축(월 10만원 이상)

②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(시·군·구)
(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)

*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

③ 유예기간(만기 후 6월)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

4 가입 및 지원 절차

구분	대상	담당 업무
신청	생계·의료 수급가구	• ‘희망저축계좌 I 자가진단표’ 작성 •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, 신청관련 서류 제출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② 희망저축계좌 I 자가진단표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④ 기타 필요서류
가입안내 및 접수	읍면동	• 희망저축계좌 I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(적립 및 해지요건) 등에 대한 안내 *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·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, 되도록 동일 가구원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)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(신용관리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함) •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 •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 * (예시)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취·창업 등의 사유로 지급 후 희망저축계좌 I 을 가입하는 경우, 희망키움통장II 가입자가 생계·의료수급 가구로 책정되어 희망키움통장II 를 환수하고 희망저축계좌 I 을 가입하는 경우 등
신청자 자격 확인	읍면동 시군구	• 읍면동에서 자격 요건* 확인 후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장결정 요청 * 신청인의 수급가구 여부, 가구원 소득, 가구원 수, 중복가입 이력 확인 등
선정 및 결과 통보	시군구	•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• 행복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 •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(통장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등) 안내 * 선정 즉시 통보하여 지연통보(계좌개설 기한 이후 참여 결정통지서 송달 등)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

구분	대상	담당 업무
선정 및 결과 통보	시군구	- 통장 개설은 가까운 금융기관 지점에서 개설,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, 비대면(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)으로 계좌 개설 가능 -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(최소 10만원 이상)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안내
계좌개설 및 본인저축	가입대상자	- 적금통장(가입자 소유)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-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~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
지원금 적립 계좌 생성	한국자활복지개발원	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 계좌 생성
지원금 생성 및 적립	시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	(시군구) 행복e음을 통해 지원 금액 생성 후 적립정보 전송 * 가입자 본인적립금 미적립 등 지원조건 미충족 시 0원으로 적립정보 생성 후 연계 (한국자활복지개발원)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한 적립실행 *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
해지 처리	시군구 지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	(시군구) 가입자 해지신청서 접수 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해지승인 (지역자활센터) 해지서류 안내 및 제출된 해지 서류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(한국자활복지개발원) 계좌 해지처리 및 SMS(문자)를 통해 해지 결과를 통보

※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일정은 7장. 부록 참고

5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

1 본인적립금

- (본인적금)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(전월 23일~당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)
 - * 적용기간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~당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까지
 - 매월 1일~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,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
 -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
 -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(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)

» 미저축자 관리 등 유의사항

- 당월 22일 경과 후 저축 시 익월 저축액으로 처리되며,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되지 않으므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입금 마감일 전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저축 독려
- 가입자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에 통보하도록 하여 교육안내 또는 미저축자 관리 시 누락되지 않도록 가입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

2 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

- (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요건) 10만원 이상 저축 + 근로·사업소득 유지기준(소득하한) 이상 발생 시
 - *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,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(당월 소득 기준)
-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30만원 매칭하여 지원

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(1) 탈수급장려금

- 가입 당시 생계·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·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
 - * 탈수급 기준은 p.43 “탈수급”요건 준용
 - **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

- (계좌 개설)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당시 생계·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 계좌 생성
- (생성 및 적립)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
- (해지 및 지급)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해지 및 지급
 - *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

(2) 내일키움장려금

-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*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중앙 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
 - * 시장진입형, 시간제 자활근로,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, 사회서비스형 지원 (Gateway 과정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계좌 개설)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
- (생성 및 적립) 지급 승인 시 '중앙자활자금'에서 일괄 적립
 - * 매월 행복e음 자활운영보고(시군구 승인) 기준으로 생성하므로,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 승인 정보가 확인되어야 내일키움장려금 생성
- (해지 및 지급)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

(3) 내일키움수익금

-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
 - * 시장진입형, 시간제 자활근로,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, 사회서비스형 지원 (Gateway 과정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 -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
 - *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「자활사업안내 I」참고
- (계좌 개설)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

- (생성 및 적립)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,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
 -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하고, 분기별 정산 시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 후 내일키움수익금 100%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
 - * 매출 정산 후 분기(1월, 4월, 7월, 10월)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후 적립내역 시군구에 보고
 - 사업단 해체 시에는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100%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
- (추가지급/추가환수) 계좌 해지 후에도 추가지급 및 추가환수 필요 시
 - (추가지급)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입출금계좌 별도 이체 처리
 - (추가환수)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환수금 입금 처리
 - * (지자체) 행복e음 '해지후정산'처리, (지역자활센터) '내일키움수익금 추가환수 반납처리' 후 환수금액 이체처리

해지 시 업무처리 절차

- ① (지역자활센터)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 시군구 보고
 - * 내일키움수익금 관련 해지후정산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참조
- ② (시군구) 해지 확정
- ③ (지역자활센터) 자활정보시스템 지급액 입력
- ④ (한국자활복지개발원) 최종 지급 및 해지 실행
 - (지급) 내일키움수익금(100%)을 전액 지급
 - (환수) 내일키움수익금(100%)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별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*로 자동입금, 환수금 취합 후 익년도에 시도* 정산 보고
 - *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로 지자체별 환수계좌
 - * 시군구는 시도에서 보고자료 공유
- ⑤ (시군구)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반납처리
 - (통장사업 담당자)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담당자 공유
 - (자활기금 담당자)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문으로 반납* 요청
 - * 자산형성지원사업 위·예탁 절차 안내 참조

- (해지 및 지급)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
-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
 - (지급)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(100%)을 전액 지급
 - (환수)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(100%)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(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)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 입금, 익년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반납처리, 지역자활센터는 매출관리 분기정산 별도 보고

(4) 시·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,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

-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·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
 - * 지원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별도 협의 필요

6 지급 및 환수 기준

1 지급

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+ 이자

- (만기지급)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·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, 본인적립금 납입, 탈수급 시
 - (근로·사업소득) 통장가입기간 3년 동안 가구의 근로·사업소득이 소득하한선(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) 이상 유지
 - (적립 유지) 통장가입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적립
 - (탈수급) 소득·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·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
 - 단, 자활사업 참여자가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사업에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저축계좌 I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
 - 특례수급자(의료, 자활, 이행)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희망저축계좌 I 지급요건 충족
 - 자립지원 별도가구의 경우, 생계·의료급여 모두 보장가구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처리 될 경우에만 탈수급으로 간주
 - 지급을 받기 위해 임의로 생계·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탈수급 인정 불가
- (중도지급)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·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
 - 3개월 평균 근로·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적립 가능
 -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(자활 및 의료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)

» 탈수급 시 확인사항

-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(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상 근로·사업소득 기준)
-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 유예기간을 두고 6월 내에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
* 만기시점 : 본인적립금 통장의 만기일과 동일
-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타보장 급여 확인 소득을 우선 적용
- 탈수급자 소득조사 시, 급여명세서(직장 가입자) 또는 소득신고서* (임시·일용·자영업자, 통장사본 등 급여이체내역 반드시 첨부)를 3월마다(매년 3, 6, 9, 12월15일까지) 1회 제출받아 확인
* 3개월 평균 근로·사업소득 기준으로 해지 여부 결정

2 일부지급

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(만기성공금) + 이자(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)

- 통장 만기(3년)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축하금 성격의 근로소득장려금 일부지급
- 유예기간(6개월) 이내 지자체 판단에 따라 탈수급이 어렵거나 가입자 요청의 경우, 일부지급 진행 가능
- 만기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희망저축계좌 I 재참여는 가능하나, 만기성공금* 추가 지급 없음
* 만기성공금(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)은 1회에 한하여 지급

3 환수

본인적립금 + 이자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)

- (만기환수)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, 가입자 중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
- (중도환수)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,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,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, 압류, 가압류, 본인 요청 시 중 1개 이상 발생한 경우

|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

구분		해지사유	지급액	적용 금리
지급	만기	•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(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)	• 적립된 전액지급 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+ 이자) * 향후 재가입 불가	• 최초 약정이율 * 만기 1월 후까지 적용
	중도	• 만기 이전 탈수급 시 (단,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) • 탈수급 후 유지 시,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(기준 중위소득의 100%) 초과 시 • 탈수급 후 6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• 탈수급 후 본인 사망 •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(6월 유예기간 내)하여 가구원 지급 요청 시		• 최초 약정이율
일부지급		•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(만기성공금)	• 본인적립금 + 이자 + 근로 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 - 나머지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(향후 재가입 가능) * 향후 재가입 가능	• 최초 약정이율
환수	만기	•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•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내 해지 신청서 미제출시	• 본인적립금과 이자(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) * 향후 재가입 가능	• 최초 약정이율
	중도	•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 • 본인적립금 12월 누적 미납 •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• 압류, 가압류 • 본인 요청 시		•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

*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→ 지역자활센터는 압류·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안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

4 해지 절차

- 해지(철회) 신청서, 적립금 지급 요구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,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시군구 직권해지 처리

*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될 경우 [해지처리 기관별 역할] 확인하여 즉시처리

» 당연해지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

- 해지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해지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,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직권해지 가능
 - 직권해지 결정 전 가입자에게 해지안내(전화, 우편 등)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, 관련내용은 상담내역 등을 작성하여 상세히 기록 관리 필요
 - 해지처리 이후 처리결과를 문자,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
- **(중도직권해지)** 본인적립금 미납, 사망 후 환수해지, 가입 중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수혜 이력 확인 시 등
- **(만기직권해지)** 3년 만기일로부터 유예기간(최대 6개월)이 도래하였음에도 해지신청 의사가 없는 가입자

I 해지처리 시 기관별 역할

구분	기관별 역할	
	시군구	지역자활센터
지급	• (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)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탈수급 확인 후 행복e음 상 지급 승인 처리 • (만기 전 탈수급) 자격정보 변동(수급자→탈수급 변경) 시 가입자에게 통장 유지의사 확인	• 시군구의 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, 가입자로부터 해지 신청서, 적립금 지급 요구서 접수 및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•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(입출금 계좌 확인) 안내
일부 지급	• 만기 후 6개월 경과 후에도 탈수급 하지 못했을 경우(행복 e음 자격 알림 확인) 행복e음 상 일부 지급 승인 처리 * 만기성공금 수령 후 재가입자는 환수 처리하고, 만기 후 6개월 이내에도 가입자 요청 시 일부지급 처리 가능	• 시군구의 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가입자로부터 해지 신청서, 적립금 지급 요구서 접수 및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•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(입출금 계좌 확인) 안내
환수	•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 등을 통해 해지사유 확인 • 행복e음 상 환수 승인 처리	• 가입자의 환수 사유 발생 시, 시군구에 환수 승인처리 요청 • 시군구의 환수 승인 후, 해당 가입자로부터 해지 신청서 접수 및 검토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•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※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지자체 통보 및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하여 시군구에서 환수 승인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

5 사후관리

- 희망저축계좌I 가입가구가 탈수급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원 받은 후 수급 재신청 시 해당 지원금액은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(「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」 참조)